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540번
- 제 안 자 : 이승미 의원 (찬성자 28명)
- 제 안 일 : 2025년 3월 31일
-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13조는 시 사무와 관련이 없는 공익제보의 경우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그 처리사항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아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작성·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강제하는 측면이 있고, 원칙적으로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이에 강행규정을 완화하고 소관 기관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시에 접수되는 공익제보는 직접처리, 이송,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각’ 개념은 실제 적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제13조 제4항의 ‘기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익제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아울러, 공익제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때,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등은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맞춰서 조례 내용도 수정함(안 제11조제3항).
-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타 기관에 이첩 시, 조사 의견을 첨부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도록 한 의무 규정, 공익제보 중 기각 사항을 시장에게 월별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4항)
-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로 이송하는 임의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사 대리신고 제도 관련과 홍보 강화 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호)
- 그 밖에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하거나 복잡한 문장 또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4.5. ~ 4.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기준의 정비(안 제11조 제3항), 공익제보의 이첩 시 불필요한 의무 삭제(안 제13조제4항) 및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부서와 관련된 경우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는 임의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관련 홍보 조항 신설(안 제21조제3호), 조문의 표현 및 용어 정비(안 제6조제1항 등)를 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

조문	주요 내용
제11조제3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맞춰 수정
제13조제4항	-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타 기관에 이첩 시 조사의견을 첨부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도록 한 의무규정과 공익제보 중 기각 사항을 시장에게 월별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
제13조제5항 <신설>	- 이첩한 공익제보의 내용이 해당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로 이송하는 임의 규정 신설
제21조제3호 <신설>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관련 홍보 강화 규정 신설
제6조제1항 등	-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표현 및 용어 정비

- 이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무적 행정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의 이해도 향상, 명확한 표현으로 집행 및 해석 등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사업 개요〉

- 목 적 :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조성(조례 제1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3. 8. 1. 제정)
 - 공익제보 : 조례 제2조의 신고를 통칭하는 조례상 용어
- 공익제보의 개념(조례 제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신고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구 분	개 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나목의 재산상 손해는 가목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판례)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95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직무수행 기본자세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4.15) 재구성

나. 세부내용 검토

1)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보상금 지급기준 정비(안 제11조제3항)

- 안 제11조제3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4.2.6.) 내용을 반영하여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상금) ③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 (이하 생략)	제11조(보상금) ③ ----- ----- ----- ----- <u>넘지</u> <u>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u> -- (이하 생략)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 감사위원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로 인해 서울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있음.

- 이는 공익제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효과의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형 방식으로, 보상금 산정이 단순하지만 실제 지급액이 고액에 달할 경우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반면, 보상금은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후”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정률(30%)을 지급하는바, 재정보호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견해도 있음.

〈 현행 공익제보 보상금 제도 개요〉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상금)
- 신청방법 : 공익제보자 직접 신청
- 신청조건 :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 지급절차 : 신청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 결정 → 지급
- 보상금액 :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상한은 두지 않았고,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음.)

※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4.15) 및 현행 조례 재구성

〈 최근 3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내역(2022 ~ 2025.3) 〉

회계 연도	사건명	제보 접수일	심의 결과 확정일	보상금 확정액 (천원)
2022	시립 수련원 임직원 횡령 제보	'17.6.8.	'22.12.6.	90,201
2023	시립 수련원 임직원 횡령 제보	'17.6.8.	'23.3.28.	90,201
	민간위탁금 부적정 집행	'19.9.27.	'23.6.29.	37,0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제보	'19.8.19.	'23.6.29.	23,217
2024	지급 내역 없음.			
2025.3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공사 부당 이득 취득고발	'24.5.16.	'25.3.21.	45,513

※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4.15) 재구성

- 본 개정안은 서울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본적인 기초와 일관되게 조정하면서도, 세부적인 산정 기준은 조례에 직접 명문화하지 않고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로만 설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상금 산정의 탄력성과 합리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세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구간 별로 점진적으로 보상률이 낮아지는 ‘역진’¹⁾ 방식으로,
 - 공익제보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 효과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고, 소액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규모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 감소, 불공정성, 보상금 계산의 복잡성 증가 등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 향후, 본 조례의 제정 취지(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를 감안하여 세부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상 보상금 세부 산정기준 〉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이란 해당 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1) 역진(逆進) : 반대 방향으로 나아감.

(역진세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 감사위원회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시행령에서 제시한 세부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 시 보상금 산정을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2) 공익제보 이첩 관련 절차 간소화(안 제13조제4항)

- 안 제13조제4항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 조사의견 첨부 및 처리결과 확인 의무’ 및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시장에게 월별 보고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공익제보에 대한 이첩 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④ 시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u>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u> 그러나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하‘담당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통하여 담당관은 월별로 기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④ <u>공익제보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시에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 조사 조치하며, 관계 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u>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현행 조례는 서울시의 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익제보의 경우에도 시가 관계기관에 이첩하면서 조사의견을 첨부하고 해당 기관의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실제 접수한 공익제보 중 상당수가 시 소관사무가 아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관계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내용이며, 이러한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사의견을 작성하고 처리사항까지 확인하는 것은 시에 실무적인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 관계기관이 조사·처리의 주체임에도, 시가 조사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은 행정권한의 혼선을 초래하거나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익제보 소관 사무별 분류 현황(2021~2025.3)〉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	관계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타기관 등)
계	1,541	440	1,101
2025.3.	42	19	23
2024	249	74	175
2023	207	67	140
2022	378	107	271
2021	665	173	492

※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4.15) 재구성

- 본 개정안(안 제13조제4항)은 서울시가 조사권한을 갖는 경우에만 자체적으로 조사 조치를 하고, 그 외 사안은 해당 기관에 단순히 이첩하며, 제보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준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 서울시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공익제보 처리 절차의 책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현행 조례는 시의 사무와 관계있는 제보를 ‘기각’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시장에게 기각 내용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공익제보는 직접처리, 이송,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본 개정안은 ‘기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3) 공익제보자에 대한 권익 보호(안 제13조제5항)

- 안 제13조제5항은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되어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이첩하거나,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이첩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u><신 설></u>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⑤ <u>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 이첩 시, 신고의 내용과 대상이 해당 기관의 공익제보 조사·처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제9조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를 따로 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관계 기관 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이첩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u>

- 이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이첩기관의 공익제보부서와 관련된 경우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공익제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4)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 관련 홍보 강화(안 제21조제3호)

- 안 제21조제3호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인식 확대 및 안심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에 관한 시민 안내와 홍보를 조례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제21조(홍보 등) ----- <u>보호제도의 활성화와</u> ----- ----- ----- 1. 2. (현행과 같음) 3. <u>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및 안심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시민 안내 강화</u>

- 감사위원회는 안심변호사 제도(대리신고 제도)를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제보 및 안심변호사 홍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포스터·리플릿 등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음.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개요〉

- **운영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 **운영절차**
 - 1단계(신청)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상담 문의
 - 2단계(접수) : 안심변호사는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
 -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 출처 :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gov/archives/93152>) 재구성

〈 공익제보 관련 홍보비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2021~2025.3)〉

연도	산출기초	편성액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2025.3	○ 공익제보 활성화 등 (교육, 홍보 등)	5,200	○ 공익제보활성화 홍보물 제작	480
2024	○ 공익제보 활성화 등 (교육, 홍보 등)	5,200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홍보포 스터 및 홍보영상 제작	4,980
2023	○ 공익제보 활성화 등 (교육, 홍보 등)	5,200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홍보포 스터 및 홍보물 제작	5,502
2022	○ 공익제보 활성화 등 (교육, 홍보 등)	5,200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홍보포 스터 디자인 및 인쇄	4,990
2021	○ 공익제보 활성화 리 플릿 제작 등	3,000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홍보포 스터 인쇄	728

※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4.15) 재구성

- 개정안(안 제21조제3호)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고,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홍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익제보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홍보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세(2021년 22건, 2022년 14건, 2023년 12건, 2024년에는 8건)를 보이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시민 접근성과 인지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안심변호사 제도를 통한 대리신고 현황(2021~2025.3)〉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3
신고 건수	22	14	12	8	8

※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4.15) 재구성

-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리플릿, 포스터, 영상 등)를 활용하여 안심번호사 제도를 홍보해 왔으나, 기존의 홍보 방식(일방향적·정보전달 중심)만으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사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단순 정보 제공형 홍보에서 나아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시민 체감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익제보 관련 홍보 실적 (2021~2025.3) 〉

구분	매체구분	매체명	홍보사항
2025.3	리플릿	홍보 리플릿	- 리플릿 : 공익제보 요건 등 안내 ▶ 700부
2024	홍보영상 포스터	홍보영상 홍보포스터	- 영 상 : 서울시 공익제보 홍보 ▶ 30초, 제보 방법 및 안심번호사 안내 등 - 포스터 : 공익제보 안심번호사 홍보 ▶ 400매, 420 * 594mm
2023	포스터 리플릿 책갈피	홍보 포스터 및 홍보물	- 포스터 : 공익제보 안심번호사 홍보 ▶ 600매, 420 * 594mm - 홍보물 : 공익제보 요건 등 안내 ▶ 리플릿 5,000부, 책갈피 6,000개
2022	포스터	공익제보 안심번호사 홍보 포스터	- 내용 : 공익제보 안심번호사 홍보 - 규격 : 500 * 700mm, 4도 - 수량 : 1,000매
2021	포스터	공익제보 안심번호사 홍보 포스터	- 내용 : 안심번호사 홍보 - 규격 : 500 * 700mm, 4도 - 수량 : 1,000매

※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4.15) 재구성

5) 자구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 등(안 제6조제1항 등)

- 안 제6조제1항 등은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비문(非門)과 중복 표현을 개선하여 조례의 가독성·법체계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개정안 세부내역

- 제6조제1항 : (현행) 소속하 → (개정안) 소속 하
- 제6조제3항 : (현행) 감사위원회내 → (개정안) 감사위원회 내
- 제6조제7항 : (현행)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 (개정안)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제7조 조제목 : (현행) 회의 → (개정안) 운영
- 제7조제1항
 - (현행)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 (개정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행) 동의로서 임시 → (개정안) 동의를 받아 임시 회의를
- 제8조제1항
 - (현행) 관계된 → (개정안) 관련된
 - (현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 (개정안) 공익제보를 할
 - (현행)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 제8조제2항제1호
 - (현행)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 (개정안)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 제10조제4항
 - (현행) 받으면 → (개정안) 받은 경우에는
 - (현행) 아니한다 → (개정안) 않는다

- 제10조제5항
 - (현행)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 (개정안)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피해나 비용 지출로 인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 제10조제6항제1호
 - (현행) 해고, 그 밖에 → (개정안) **해고 등**
 - (현행)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 (개정안)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평균 임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월평균액**
 - (현행)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 (개정안) **지급**
- 제11조제1항 : (현행) 단, 공익신고의 경우 → (개정안)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 제11조제3항
 - (현행) 지급하며 → (개정안)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 (현행) 아니한다 → (개정안) **않는다**
 - (현행)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 **다만,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제4항
 - (현행) 대하여 → (개정안) **대해서**
 - (현행) 아니할 → (개정안) **않을**
- 제11조제5항 : (현행)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 **예외로 한다.**
- 제11조의2제1항
 - (현행) 재정상 → (개정안) **재정에**
 - (현행)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 (개정안) **공익을 증진시킨**
 - (현행) 다만 → (개정안) **다만,**
- 제13조 조제목 : (현행)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 (개정안)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 제13조제3항 : (현행) 공익제보센터 → (개정안) **센터**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임 재 빈
---------	-------	-----------	-------

참 고	공익제보 접수처리 절차
-----	--------------

○ 공익제보 접수처리 절차

제보상담	○ 전화: 2133-4800 / 이메일: watchdog@seoul.go.kr ○ 안심번호사 이메일 상담(응답소 공익제보 창구 → 안심번호사 안내)
------	---

신고접수	○ 응답소 홈페이지 공익제보창구 (방문접수: 공익제보지원센터 방문 접수) https://eungdapso.seoul.go.kr/ ※ 시설근로자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인권침해는 별도 신고절차가 있으므로 응답소 해당 메뉴(노동조사 신고, 인권침해 구제신청)로 문의·접수
------	---



사건분배	○ 부패 신고	- 시 공무원 : 조사담당관 직접 조사 / 구 공무원 : 자치구 감사담당관 - 투출, 위탁·보조금 등 기관 관련 : 시 소관부서 또는 소관기관 감사부서 ※ 중대사안은 조사담당관 직접 조사
	○ 공익신고	- 시 소관사무 : 시 소관부서 - 구 소관사무 : 자치구 감사담당관(직접조사 또는) → 자치구 소관부서
	☞ 사건 분배 예시	- 사구 모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시설 관련 신고 : 1차 감독을 실시하는 해당 자치구 분배 - 제보 내용상 자치구 감독이 미비한 사안인 경우 시 소관부서 분배 - 소관부서 비리 연루, 고위직 관련 등 중대사안 조사담당관 직접조사 ※ 투출기관, 자치구 사건은 해당기관 감사실로 우선 분배하며 이후 감사실 직접조사여부 및 처리부서 지정은 해당기관 판단



조사통보	○ 처리자 확정시 알림(응답소 시스템 자동통보) ※ 처리기간 공지(근무일 기준 60일 산정 날짜 통보)
------	--



결과통보	○ 조사기간 : 60일 이내(연장 가능)
------	--

※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4.15)